

구 소련 국가에서의 특허 상표의 출원 및 재등록

宋 晚 鎬
〈辨 理 士〉

목 차

I. 상표

1. C.I.S 공화국(12개국)
2. BALTIC STATES(3개국)
3. 각국별 재등록/ 재출원 기한

II. 특허

1. C.I.S 공화국(12개국)
2. BALTIC STATES(3개국)
3. 각국별 기한 요약

〈고딕은 이번호, 명조는 다음호〉

구 소련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분할독립한 러시아를 비롯한 C. I. S. 공화국(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)과 발틱연안국가(Baltic States)들은 각각 별도의 특허법과 상표법을 시행중이거나 마련중에 있다. 이미 구 소련에 등록된 것이나, 출원하였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상표는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. 분할 독립한 각 공화국(15개)마다 그 처리를 달리하고 있다. 독립공화국마다 구소련 등록을 재등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출원계속중인 사건은 재출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. 이하에서 각 공화국별 주요절차와 재등록/ 재출원 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살펴본다.

I. 상 표

1. C. I. S. 공화국(12개국)

1) 러시아(RUSSIA) 공화국

① 구소련연방의 상표법을 그대로 계승한다.

② 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 등록 상표의 경우,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등록이 인정된다.

③ 출원국가변경신청

-1992년 10월 15일 이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출원상표에 대해서는 구소련연방출원에서 러시아공화국출원원으로의 출원국가변경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.

-출원국가변경신청기한 : 1993년 6월 30일까지이다.

④ Madrid협정에 따라 출원한 International trademark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원출원이 인정된다.

⑤ 신규출원

-신규상표출원시 구비서류 :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28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

우선권서류

2) 우크라이나(UKRAINE) 공화국

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.

② 우크라이나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③ 우선권제도도입(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)

④ 재등록출원

-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재등록출원기한: 1993년 3월 18일 까지이다.

-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등록증사본 1통

상표견본 4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

위임장 2통(추후제출불가)

⑤ 재출원신청

-1991년 12월 24일 이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.

-재출원신청기한: 1993년 3월 18일 까지이다.

-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출원서사본 1통

U.S.S.R.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

1991. 12. 25. 이전의 심사결과통지서, 의견서 등 출원관련서류 사본

상표견본 30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,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2통(추후제출불가)

⑥ 신규출원

-신규등록출원시 구비서류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30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(추후제출불가)

3) 그르지아(GEORGIA) 공화국

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.

② 조르기아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③ 우선권제도도입(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)

④ 재등록출원

-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재등록출원기한: 1993년 9월 1일 까지이다.

-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등록증사본 1통

상표견본 12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

⑤ 재출원신청

-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.

-재출원신청기한: 미정

-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출원서사본 1통

U.S.S.R.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

1991. 12. 25. 이전의 심사결과통지서,

의견서 등 출원관련서류사본

상표견본 25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,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2통

⑥ 신규출원

-신규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12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

4) 카자흐(KAZAKHSTAN) 공화국

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.

② 카자흐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③ 우선권제도도입(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)

④ 재등록출원

-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재등록출원기한 : 1993년 11월 1일 까지이다.

-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등록증사본 1통

상표견본 5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2통

⑤ 재출원신청

-1991년 12월 1일 이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.

-재출원신청기한 : 1993년 11월 1일까지이다.

-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출원서사본 1통

U.S.S.R.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

1991. 12. 25. 이전의 심사결과통지서, 의견서 등 출원관련서류사본

상표견본 5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,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2통

⑥ 신규출원

-신규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15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

5) 우즈베크(UZBEKISTAN) 공화국

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.

② 우즈베크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③ 재등록 출원

-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재등록출원기한 : 1993년 7월 1일 까지한다.

-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등록증사본 1통(공증요)

상표견본 5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

위임장 1통

④ 재출원신청

-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등록사정된 USSR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.

-재출원신청기한 : 1993년 7월 1일

-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출원서사본 1통

U.S.S.R.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

등록사정서사본 1통

상표견본 5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,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2통

⑤ 신규출원

-신규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25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 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

6) 벨라루스(BELARUS) 공화국

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.

② 벨라루스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③ 재등록출원

-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재등록출원기한 : 1993년 10월 5일 까지이다.

-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 미정

④ 재출원신청

-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.

-재출원 신청기한 : 1993년 8월 5일까지이다.

-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: 미정

⑤ 신규출원

-신규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28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 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

7) 몰도바(MOLDOVA) 공화국

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.

② 몰도바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③ 재등록출원/재출원신청

-구소련연방에 기등록된 등록상표 및 현재 계류중인 USSR출원 상표에 대한 재등록 및 재출원의 효과인정여부는 아직 미정이다.

④ 신규출원

-신규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28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 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

8) 아제르바이잔(AZERBAIHAN) 공화국

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.

② 아제르바이잔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③ 재등록출원/재출원신청

-구소련연방에 기등록된 등록상표 및 현재 계류중인 USSR출원 상표에 대한 재등록 및 재출원여부는 아직 미정이다.

④ 신규출원

-신규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28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 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

9) 아르메니아(ARMENIA)공화국, 키르기(KIRKISTAN)공화국, 타지크(TAJIKISTAN)공

화국, 투르크메니(TRUKMENISTAN)공화국

-현재 상표법 제정 작업중이다.

2. BALTIC STATES(3개국)

1) 에스토니아(ESTONIA)공화국

① 에스토니아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② Madrid협정에 따른 International registrations는 등록받을 수 없다.

③ 우선권제도도 도입(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)

④ 재등록출원

-구소련연방에서 1991년 12월 24일 이전에 기등록된 USSR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재등록출원기한 : 1993년 3월 31일 까지이다.

-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, 영업활동범위

U.S.S.R.의 상표등록증사본 1통(공중요)

상표견본 16매(8cm×8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위임장 1통(공중요)

⑤ 재출원신청

-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원출원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규출원하여야 한다.

⑥ 신규출원

-신규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, 영업활동범위

상표견본 16매(8cm×8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위임장 1통(공중요)

2) 라트비아(LATVIA)공화국

① 라트비아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② 우선권제도도 도입(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)

③ 재등록출원

-구소련연방에서 1991년 12월 31일 이전

에 기등록된 USSR 등록상표 및 Madrid협정에 따른 International registration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재등록출원기한 : 1993년 6월 30일까지이다.

-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등록증사본 또는 International 등록증사본 1통(공중요)

상표견본 10매(8cm×8cm)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

④ 재출원신청

-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.

-재출원신청기한 : 1993년 6월 30일 까지이다.

-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출원서사본 1통

U.S.S.R.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상표견본 10매(8cm×8cm)

문자상표의 경우,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2통

⑤ 신규출원

-신규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10매(8cm×8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

3) 리투아니아(LITHUANIA)공화국

① 리투아니아특허청 활동개시한다.

② 우선권제도도입(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)

③ 재등록출원

-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재등록출원기한 : 1993년 4월 30일 까지이다.

-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등록증사본 1통(공증요)

상표견본 10매(5cm×5cm 또는 5cm×10cm)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위임장 1통(공증요)

④ 재출원신청

-1990년 1월 1일 이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1992년 1월 31일 까지 출원계류중인 USSR 출원상표 및 Madrid협정에 따른 국제등록(International registrations)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.

-재출원신청기한 : 1993년 4월 30일 까지이다.

-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U.S.S.R.의 상표출원서사본 1통(공증요)

U.S.S.R.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(공증요)

심사결과통지서, 의견서, 등록사정서 등 출원관련서류사본(공증요)

상표견본 10매(5cm×5cm 또는 8cm×8cm)

문자상표의 경우,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위임장 1통(공증요)

⑤ 신규출원

-신규등록출원시 구비서류 :

출원인의 성명, 주소

상표견본 10매(5cm×5cm 또는 8cm×8cm)

국제분류에 따른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 리스트

문자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의미 및 원산지명칭에 대한 설명서

위임장 1통(공증요)

3. 각국별 재등록/ 재출원 기한

1) 재등록출원기한 :

우크라이나(1993. 3. 18), 그르지아(1993. 9. 1), 카자흐(1993. 11. 1), 우즈베크(1993. 7. 1), 벨라루스(1993. 10. 5), 에스토니아(1993. 3. 31), 라트비아(1993. 6. 30), 리투아니아(1993. 4. 30)

2) 재출원신청기한 :

러시아(1993. 6. 30), 우크라이나(1993. 3. 18), 카자흐(1993. 11. 1), 벨라루스(1993. 8. 5), 라트비아(1993. 6. 30), 리투아니아(1993. 4. 30), 우즈베크(1993. 7. 1) <계속>

소련총람

북방권연구회 편

규격:A5신·318면 가격:5,000원

新商標法解説

江口俊夫 著 규격:A5신·352면

鄭完燮 譯 가격:10,000원

판매: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(전화 02) 551-5571~2)